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8 선고 2019가단6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0. 1. 8.

주 문

1. 원고에게 평택시 F 임야 5,845m²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7. 18. 접수 제47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7. 18. 접수 제476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D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7. 18. 접수 제476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E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7. 18. 접수 제47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조영진

별지